안산대학교	직원복무규정	규정번호	3-1-23
		제정일자	1997.03.01.
		개정일자	2019.03.01.
		개정차수	10차
		소관부서	행정지원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기타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직원인사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신앙생활) 직원은 기독교인으로서 교내 아침 예배 및 정기 신앙수련회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복무기강 및 윤리) 직원은 대학의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하며 담당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청렴결백)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2. (품위유지) 직원은 학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 하며 부도덕한 행위나 불법행위로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6조(금지사항) ① 직원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영리행위를 하거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고유직무로 알게 된 학원내의 정보 문서 등을 총장의 허가 없이 누설하거나 반출 공포할 수 없다.

제7조(근무시간 등) ① 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정규 근무시간과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근무시간 변경) 총장은 방학 등 계절상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9조(사직시의 근무)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예정일 1개월 전까지 부서장과 협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면직 발령일까지 정상 근무 하며 후임자 또는 업무대리자에게 업무를 인계 한다.

제10조(출퇴근기록) ① 직원은 출퇴근시 본인이 직접 출퇴근기록기에 인자 한다.

② 출퇴근기록은 매월 점검한 후 지각, 조퇴, 결근, 출장, 연가, 공가, 병가, 경조휴가 등으로 구분 정리한다.

제11조(휴가종류 및 휴가청원) 휴가의 종류는 연가, 공가, 병가, 출산휴가, 경조휴가,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휴가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가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연가) 총장은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직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정규직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르며 비정규 직원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13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근무 한다.

1. 병역관계로 근무할 수 없을 때
2. 공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4조(병가) ① 총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하며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총장은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한다.

제15조(출산휴가) 직원이 임신을 한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유급휴가를 허가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출산 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유급 휴가기간 중 해당 직원의 직무를 대신하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경조휴가) 직원에 대한 경조휴가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며 자녀 결혼 등 휴가 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에 있을 경우, 사유 발생 전 근무일 또는 그 다음 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비고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제17조(특별휴가) ① 특별휴가는 포상이나 특별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할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여성 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줄 수 있다.

③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은 퇴직예정일 3개월 전부터 퇴직예정일까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8조(휴가 일수의 계산)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휴일을 포함 한다.

제19조(출근명령)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결근) ①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휴가승인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긴급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휴가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상급자 또는 소속부서장이 대리 신청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무단 결근시 본인의 연가일수에서 감한다.

제21조(조퇴) 질병, 기타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퇴승인신청서을 행정지원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조퇴한다.

제22조(휴일)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주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법령에 의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기타 정부 또는 학칙에 의거 별도로 정한 휴업일 등

제23조(출장 및 외출)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무시간 중 공무로 외출시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출장보고) 출장의 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부서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 한다. 다만, 연수 출장인 경우 교육(연수)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이거나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25조(사무인계) 직원의 면직, 휴직 또는 부서 변경의 명을 받은 자는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사무의 소관서류 및 물건의 개요와 미결 사항을 지명한 자에게 인계 한다. 다만, 후임자의 미취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정기일 내 인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속장이 지정하는 대리자에게 인계하고 추후 대리자가 취임자에게 인계토록 한다.

제26조(인계입회 및 절차) 전조에 의한 사무 인계시에는 해당 기관의 직원의 입회를 요하며, 사무인계·인수서 3부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인계자가 소속된 부서에서 1부를 보관한다.

제27조(신상 변경의 보고) 직원은 거주지이전, 개명, 학력, 가족사항, 재정보증인의 변경, 신분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행정지원처에 제출 한다.

제2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년 12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